##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4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한민수·황명선·서영교

이연희 • 복기왕 • 허종식

이학영 · 황정아 · 김태년

소병훈ㆍ허 영ㆍ김남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법률 제 호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5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국무</u>	<u>국무</u>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		
	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무기		
	명 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